# 자 치 정 보 화 조 합 규 약 안
# 검 토 보 고

**1. 제 출 자 :** 충청북도지사

**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**

○ 제출일자 : 2002년 11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11일

**3. 제안이유**

○ 21C 정보화 시대에 대응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 및 지역 정보화사업이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낭비는 물론 전국 공통적인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

○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균형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협의·조정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.

○ 이를 위해 16개 시·도가 구성원이 되는 자치정보화조합이 행정자치부 주도로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, 우리 도가 본 조합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서 자치정보화조합규약(안)의 의회 의결이 필요.

## 4. 주요골자

○ 목적은 전자정부 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(제1조)

○ 명칭은 **"자치정보화조합"** 으로 하고, 구성은 16개시·도로 하며,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. (제2조, 제3조, 제4조)

○ 조합의 사무 (제5조)

- 전자정부 구현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
-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 사업
-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추진 및 협의 조정
-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S/W의 개발 및 유지보수
- 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위임·위탁사무
- 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컨설팅
-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 교육·훈련 등

○ 조합회의 구성, 임원, 의결, 감사, 운영, 결정(제6조~제11조)

- 조합회의 위원은 시·도의 정보화 담당 실·국장 또는 CIO
-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 각 1명 선출, 임기 2년
- 조합회의 의결사항은 조합규약의 개정, 조합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,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, 예산·결산의 승인 등
- 조합회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매년 정기회의 시 실시하며 5일 범위 내에서 한다
- 조합회의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,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 개최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- 조합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(단 조합장 선임과 분담금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)

○ 집행기관(제12조, 제13조)

- 조합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이며, 1회에 걸쳐 연임 가능
- 사무기구는 기획관리실과 사업본부를 두며,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파견공무원으로 구성

○ 재무 및 회계(제14조, 제15조, 제16조)

- 조합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분담금과 정부의 지원금,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, 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인구, 재정력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결정
- 예산편성은 조합회의에서 심의·확정하며,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자치단체에 통보하며, 집행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결산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조합회의의 승인, 자치단체에 통보

○ 보칙(제17조, 제18조)

-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가능
-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 준용

○ 부칙 (제1조, 제2조, 제3조)

- 규약 승인후 지역정보화협의회 규약폐지와 협의회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조합이 승계
-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정관에 의하여 해산한 후 조합은 이를 승계

## 5. 검토의견

○ **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검토한 바**

이는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정부 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,

규약안의 주요 내용은

◦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고,

◦ 각 시·도의 정보화담당 실·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을 위원으로 하며,

◦ 조합의 사무는

- 정자정부구현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
-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추진 및 협의조정
- 자치단체 공통적용 S/W 개발 및 유지보수
- 정보화촉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컨설팅, 교육·훈련 등이며,

◦ 회의는 매년 하반기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,

◦ 재원은 자치단체 분담금과 정부의 지원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,
자치단체 분담금은 인구,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내용입니다.

본 규약안은 각 시·도가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조합구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,

2000년 제182회 정례회에서
자치단체간 정보공유 확대와 지역 정보화 촉진으로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,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인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과의 차별성과

지역정보화협의회의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내용과 협의회 운영 등 주요 관심사항 처리실적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**붙임 :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**